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2024. 06.



대한상공회의소

목차

01.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 위한 기반조성

02.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선진화

03.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위한 여건 마련

04.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제도 합리화

05. 국민 삶의 질 제고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 완화

06. 대·중소 상생 협력방안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01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 위한 기반조성



1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21년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R&D투자 세액공제 신설
- 한시적으로 도입돼 '24년 말 일몰 예정. 경쟁국은 전략산업에 중장기 세제지원중

주요국 반도체산업 지원 현황

구분		 대만	 EU	
법령	Chips Act	산업혁신조례	European Chips Act	경제안전보장추진법
혜택	최대 25% 세액공제 (총예산 \$390억)	세액공제	- (총예산 € 430억)	설비투자액 최대 50%
기간	~'26년	~'29년	~'30년	-

개선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30년까지 일몰 연장
- 국가전략기술 R&D투자 세액공제 '30년까지 일몰 연장

2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방식 도입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지원방식으로 '법인세 공제' 한 가지만 규정
- 대규모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 있는 첨단산업 투자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불가능
- 미국 IRA의 경우 직접환급방식(Direct Pay), 제3자 양도방식 등으로 투자 지원

주요국 첨단산업 세액공제방식 현황

구분			
규정	IRA	연방예산안	조세특례제한법
방식	법인세 공제 / 직접환급 / 제3자 양도	법인세 공제 / 직접 환급	법인세 공제

개선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에 직접환급·제3자 양도방식 도입

3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추가공제 한도 폐지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23년 4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해 시설투자 당기분 세액공제율 최대 6%p 상향
-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10% 추가 공제해주나 기본공제액의 2배까지의 한도 존재
- 시행기간 1년은 너무 짧아 기업 투자결정을 유도하는 정책효과는 제한
- 민간투자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해법으로 투자 활성화 지원책 유지 필요

분야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	3 → 6%	6 → 10%	12 → 18%	

개선

- 임시투자세액공제 '26년까지 기한 연장 및 추가공제 한도조항 폐지

4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대기업의 일반 R&D비용 세액공제율 지속적 축소中('13년 6% → '14년 4% → 현행 2%)
- 주요국 대비 일반 R&D비용 지원 불리

주요국 일반 R&D 지원 현황

구분		 대만	 EU	
공제율	10%	15%	개발비 100% 손금인정	6~14%
기타	(당기비용-3년평균 50%)×14% 적용 가능	혁신기술은 25%	법인세율 25% 고려시 25% 감면 효과	공동연구비×20~30% 추가

개선

-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및 차별적 공제산식 삭제
- (대기업) 2% → 5%, (중견기업) 8% → 10%

5

해외 물류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24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재도입 되었으나 물류시설 투자는 未적용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or 취득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공제율	•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

- 러·우 전쟁, 미·중 갈등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대비해 해외 물류인프라 사업 추진 필요

개선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 해외 현지 물류시설 또는 현지 물류회사 지분투자 등 물류부문 포함

6

사업화시설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사후 인정시 면제)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국가전략기술 등은 先세액공제-後시설인정 가능하도록 사후심의제도 시행中
- 그러나 시설인정 신청금액과 최종 심의금액간 차이 관련 사후관리 규정 부재

사후심의제도 관련 가산세 애로 사례

- | A기업은 5천억원 규모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 후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받았으나 국가전략기술 심의결과 3천억에 대해서만 인정
- | 未인정 금액인 2천억원에 대해 납부지연 이자 외 신고불성실 가산세* 10~20% 부과 가능성
* 무신고일 경우 관련 가산세 20%,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10% 부과

개선

- '先세액공제 後시설인정 제도' 활용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규정 신설

7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 높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성장이 정체된 상태

서비스산업 GDP비중 비교

(단위 : %)

구분						
비중	78	72	71	70	63	58

- 서발법 입법('11년 최초 발의)이 10년 넘게 지연돼 新사업 둘러싼 갈등조정 지원도 미비
 - 의료·법률·모빌리티 등 신·구사업자간 갈등 존재(ex. 로톡-변호사협회 분쟁 등)

개선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입법

8 법인세 추가과세 신중입법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정유사 초과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횡재세 도입 관련 논의 존재
 - *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 20~50%의 법인세 추가 과세
- 석유업계의 미래사업구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규제 도입하면 기업 애로 가중

2023년 국내 업종별 영업이익률

(단위 : %)



개선

- 초과이익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법안 신중입법

9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완화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지주회사 그룹은 일률·중복·차별적 금산분리 규제로 투자자금 조달에 제약
- 주요국은 규제 없거나 은행 중심으로 규제하나, 우리나라는 산업-금융 엄격 분리

주요국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비교

구분				EU
산업측면	일반지주의 금융사 소유 금지	일반지주의 은행 소유 금지	×	×
금융측면	금융지주의 비금융사 소유 금지	금융지주의 비금융사 소유 금지	금융지주의 대규모 금융사·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

개선

- 지주회사의 자산운용사 소유(전략산업펀드 조성)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법 제18조 2항 5호, 3항 3호, 4항 4호

10

전략산업지원기금 신설(기안자금 활용)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주요국은 대규모 기금 조성해 첨단산업 육성 중이나 우리나라는 별도의 기금 부재



- 한편, 코로나19 극복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25년 정리 예정- 까다로운 조건, 7%대 고금리 등 → 지원실적 미미('20년 40조원 중 지원실적 8천억원)

개선

- 첨단산업 지원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가칭)' 신설
- 기존 기간산업안정기금 활용(산업은행법 개정), 대출시 국채 이자율 이하 금리 적용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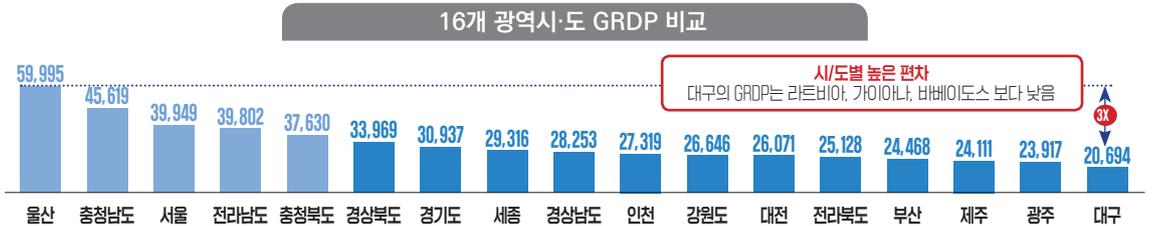
지역경제혁신특별위원회 설치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현황

-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지역 소멸 우려도 커지는 상황

*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달러 상회하나, 광역시도 별 GRDP 측면에서는 편차가 3배 수준



- 기업·인구의 지역 유입 활성화해야 하나 각종 규제 및 제도적 장벽 큼

개선

- 국회에 '지역경제혁신특위' 설치해 초당적으로 지역경제 혁신 위한 입법과제 도출
- 과거 특정 정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특별위원회가 한시적·부분적으로 설치·운영된 사례 있음

12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개발사업 규제 완화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현황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은 산업입지와 도시개발의 균형잡힌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속적 발전을 유도해야함
-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시행자가 전액부담 (cf.비수도권은 개발부담금 면제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전액 지원)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규제목적	과밀화 방지 위한 인구·산업 분산	산업입지와 도시개발의 적정관리	한강수질 및 녹지보전
행정구역	서울시 등 16개시	안산 등 14개시, 1개군	이천시 등 6개시, 2개군
면적	2,019km ² (17%)	6,019km ² (50.7%)	3,830km ² (32.3%)
인구	18,797천명 (72.2%)	5,960천명 (22.9%)	1,266천명 (4.9%)



개선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 규제완화
- 개발부담금 50% 경감, 산업 기반시설 설치 50% 지원, 농지보전부담금 등 50% 경감 등

13

항공기 부품 무관세화

소관 기획재정부위원회

현황

-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 제도가 '25년부터 단계적 일몰되어 '29년 종료 예정
- FTA 활용률 매우 저조하고, 주요국은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 유지 中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 제도의 연도별 감면율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TCA	100%	100%	80%	60%	40%	20%	종료
非TCA	50%	40%	20%	종료	-	-	-

개선

-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 제도 일몰조항 삭제 또는 연장(최소 5년 이상)

14

면세점 특허 갱신횟수 제한 폐지

소관 기획재정부위원회

현황

- 제한적인 면세점 특허기간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다수 애로 발생
- 주요국은 특허기간 제한 없거나 갱신횟수 제한 없음

주요국 면세점 특허기간 현황

		 태국		 싱가포르	
10년 (2회 갱신, 최대 20년)	1년 갱신 * 사실상 영구적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10년마다 갱신

개선

- 특허 갱신횟수 제한 폐지

15

방송통신 분야 부담금 통폐합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황

- 방송사업자는 경영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산업침체기를 겪는 기업 부담 가중
- 그간 부적절한 기금 운용 개선, 유사부담금과의 통합 등의 이슈도 지속적으로 제기

[국회] 부적절한 방발기금 운용 지적 사례

- '17년: 문체부 감독받는 아리랑TV 예산 전액 지원
- '19년: 국악TV 등 특정채널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 '21년: 방통위 산하기관 인건비/경상비 지급 등

[정부] 법정부담금 완화 기조 지속

- 기재부, 유사한 법정부담금 통폐합 지속 권고
 - '23.5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 ('23년 기금평가 결과 中)
 - '23.8 "실효성 낮거나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 통폐합"(2023-2027 국가재정운용 계획 中)
- 대통령, "현행 부담금 전수 조사해 원점 재검토"
 - '24년 제4차 국무회의('24.1월)

개선

-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

16

사업용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 제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현황

- 사업용 항공기는 취득세·재산세를 조건부·기한부 감면 중
 - [취득세] 60% 감면, [재산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 3년 한시적용
- 주요국은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제고 위해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

주요국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부과 현황

구분		 EU			
취득세	x	x	x	x	60%감면(3년 한시적용)
재산세	x	x	x	80~90% 감면	조건부 50% 감면(3년 한시적용)

개선

- 사업용 항공기는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17

한-UAE CEPA, 한-GCC FTA 비준동의안 신속 통과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현황

- 한-UAE CEPA,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A 타결 후 국내 절차 진행중
- 관세의 단계적 철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비준동의안 신속 통과 필요
 - 석유제품 생산 원재료로 사용되는 원유(UAE) 및 벙커C유(UAE, GCC)의 관세가 FTA 등 발효 시점 기준 10년간 단계적 철폐 예정 → 이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의 원가 경쟁력 강화 및 수출여건 개선 기대

개선

- 한-UAE CEPA, 한-GCC FTA 비준동의안 신속 통과 촉구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02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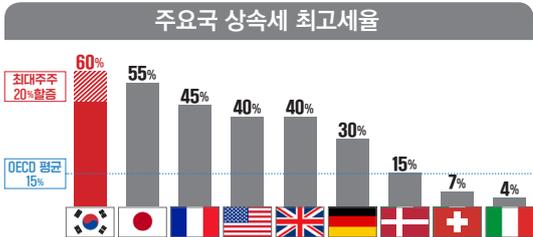


18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소관 기획재정부위원회

현황

-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시 국내 상속세 부담 매우 높고, 과세 체계도 불합리
-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 제약



구분	과세방식	국가
상속세 과세	유산취득세방식	20개국 (독일, 프랑스 등)
	유산세방식	4개국 (한국, 미국 등)
상속세 비과세	-	14개국 (캐나다, 스웨덴 등)

개선

- 최고세율을 OECD 평균(15%) 또는 G7 평균(30%)으로 인하
-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상속공제액 상향

19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현 동일인 지정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시대변화에 맞지 않아 기업 경쟁력 저해
- 40여년 전 경제개발 초기 도입된 제도로 전 세계 유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의 문제점

구분	조문	문제점
비영리법인 임원 / 사외이사	영 4조 2항	임원 후보의 보유회사가 계열사 포함 → 인재영입에 애로
지정자료 제출의무자	법 31조 4항	법상 의무자는 회사 또는 특관인 → 공정위는 동일인에게 의무 부과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제재	법 125조 1호	특관인(친족)의 비협조시 동일인 처벌 → 책임주의 위배 소지

개선

- 비영리법인 임원·사외이사 의 독립경영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
- 지정자료 제출의무자를 '회사'로 명시, 위반시 제재 수준 완화(형벌 → 과태료) 등

20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부분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규정 존재(27개 유형에 징역·벌금)
- 주요국은 경쟁법상 일부 분야에만 형벌조항 존재

국가	카르텔	시지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헝가리,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위스, 핀란드, 룩셈부르크, 칠레, 터키, 벨기에, 오스트리아, 멕시코	형벌규정 없음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아이슬란드	○	×	×	×
미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이스라엘	○	○	×	×
한국	○	○	○	○

개선

- 공정거래법상 담합 외 형벌규정 폐지(과태료 전환 등)

21

완전 모자회사간 내부거래 예외 인정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 보유한 완전 모자회사간에도 내부거래 금지
- 주요국은 완전 모자회사간 내부거래를 경쟁법 규제대상에서 제외



판례로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경쟁법 규제 未적용

* 美연방대법원의 Copperweld 판결(1984)



기업집단 계열사간 협조적 행위는 경쟁법상 위법행위 아니라고 판단

* 獨연방최고재판소는 모회사가 자회사 위해 게재한 무상광고에 대해 자회사 경쟁력 강화하지만 경쟁제한금지법상 위법 아니라고 판단(1982)

개선

- 완전 모자회사간 내부거래 규제 적용 제외
 - 예외규정 신설 : 공정거래법 45조 1항 9호

22

주주행동주의 관련 대응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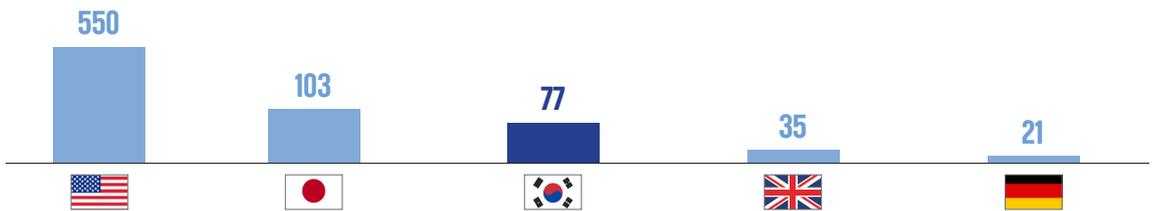
소관 정무위·법사위

현황

-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받은 기업 수는 지난 5년간 10배 증가('19년 8개 → '23년 77개)
- '23년 글로벌 행동주의펀드 피공격 기업은 美·日 이어 글로벌 3위

주요국의 행동주의펀드 피공격 기업 수

(단위 : %)



개선

- 자본시장법상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대상(파생상품 포함) 및 요건(5% → 3%) 강화
- 상법상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신주인수선택권 등)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3% Rule 폐지

23

입법영향분석 도입 확대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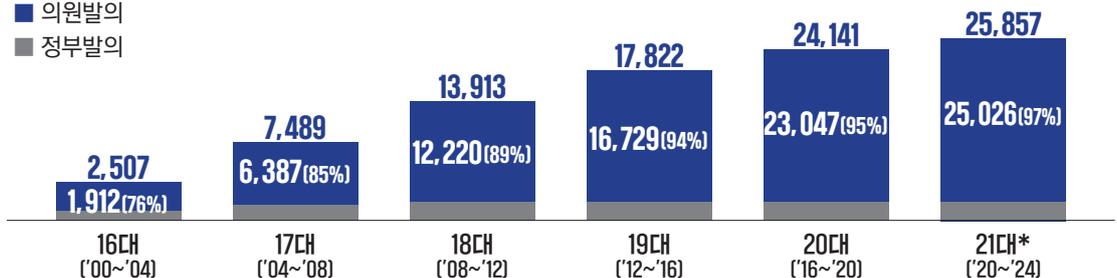
현황

- 우리나라 법안 발의 건수는 급증세를 지속하며 역대 最多 기록 갱신중
- 심의해야할 법안이 급증하면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고 입법품질 저하도 우려

국회 발의법안 건수

* 제21대 국회 '24.5.29 현재 기준

■ 의원발의
■ 정부발의



개선

- 입법품질 제고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조속 도입

24

균형잡힌 노사관계 위한 노조법 개정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현황

- 대립적·후진적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
- 파업시 대체근로금지·사업장 점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주원인

주요국 파업시 기업 방어권 보장수준 비교

국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규정 없음	형사처벌규정 없음	형사처벌규정 있음	형사처벌규정 없음
대체근로	금지규정 없음	대체근로 허용 (단, 파견 대체금지)	대체근로 허용 (단, 기간제·파견 대체금지)	파견 대체만 금지
사업장점거	불법행위	불법행위	사업장 점거 금지	전면적, 배타적 점거 금지

개선

-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및 사업장 점거 금지 통한 기업의 방어권 보장
-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 및 부당노동행위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일원화*

*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 대한 노조 원상회복 위한 행정적 구제절차와 형벌 부과 등 형사적 구제절차 동시 병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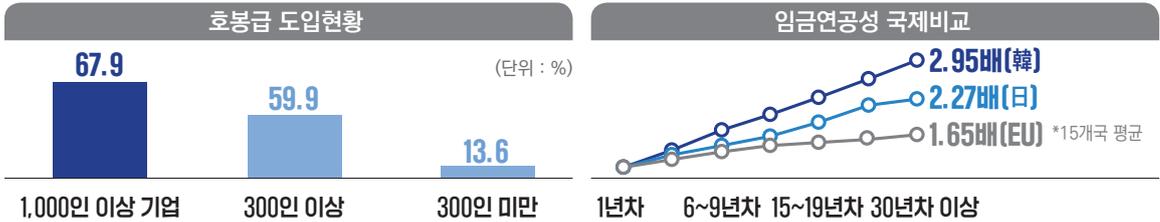
25

임금체계 개편 위한 인프라 구축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현황

-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체계는 근속연수 따라 임금 올라가는 연공급 중심
- 직무성과 무관한 임금체계는 중고령인력 고용불안, 청년일자리 문제 등 부작용 초래



개선

- '연공급 →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 시 취업규정 변경절차 완화
- 현 사회적 합리성 또는 법에 근거한 임금체계 개편시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을 성실한 협의로 전환
- 미국 NCS(National Compensation Survey)와 같은 임금·직무 데이터시스템 구축·제공

26

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정비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현황

- 법 적용대상(경영책임자, 도급범위)·의무이행 판단기준이 모호·불명확
- 과도한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효과는 기대에 못 미쳐

기업 규모별 재해사망사고 발생 현황

구분	사망자수(명)			사망사고 건수(건)		
	'21년	'22년	'23년	'21년	'22년	'23년
50인(역) 미만	670	388	354	-	381	345
50인(역) 이상	158	256	244	-	230	239
총계	828	644	598	-	611	584

개선

- 경영책임자, 도급범위, 안전·보건관계법령 등의 법상 정의·기준 명확화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노력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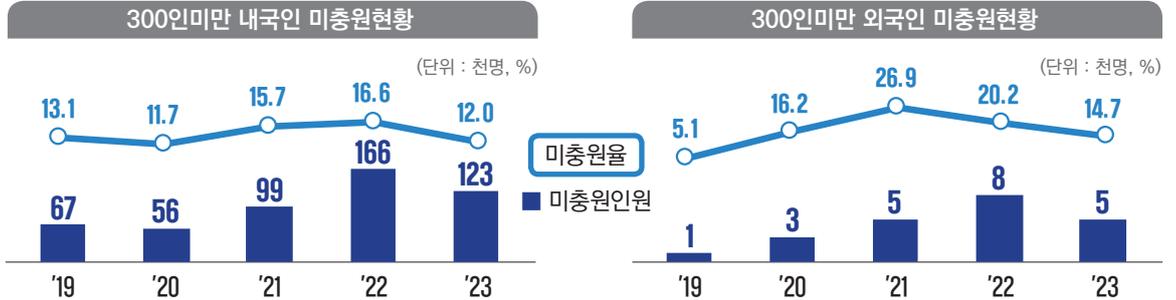
27

생산인력 부족 해소 위한 외국인력 적극 활용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현황

- 생산인구 감소로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 높아지고 있음
- 짧은 체류기간, 잦은 사업장 이탈·이직 등 외국인력 관리 어려움은 증가



개선

- 안정적 외국인력 활용 위한 재출입국 절차 삭제(3년 근무 후 출국절차 없이 재고용 허용 등)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시 규제강화*

*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 축소, 사업장 변경 제한기간 도입, 외국인근로자 태업시 책임부과

28

파견근로 사용규제 완화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현황

- 파견법 도입취지와 달리 엄격한 파견업무 제한으로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 괴리
- 반면 주요 국가들은 폭넓은 파견근로 허용으로 인력활용의 경쟁력 확보

주요국 파견허용 업무 범위

대한민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32개	소 업무	소 업무	소 업무 (건설 제외)	소 업무 (건설/경비/의료/항만운송 제외)	소 업무

개선

- 파견허용업무를 기존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변경
- 기업수요 많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 허용 등 금지 필요한 업무 제외하고 모두 허용

29

고소득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 도입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현황

- 근로시간 규제는 당초 제조업 생산 근로자를 규율 대상으로 형성되었으나, 산업구조·근로형태 변화에도 여전히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 적용
- 반면, 주요국은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마련하여 기업의 자율과 근로자선택권 보장

주요국 근로시간제 현황

구분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제도	White-Collar Exemption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근로시간 규제 예외 가능	옴트아웃제 (주 48시간 초과근무 가능)
대상	연 107,432달러 이상 관리직·행정직·전문직	1,075만엔 이상 전문직	근로시간을 사전에 결정할 수 없어 재량권 갖는 근로자	모든 근로자
특징	-	금융상품 개발, 애널리스트 등 분야	근로일수·임금을 포괄 약정	①근로자의 자발적 서면동의 필요 ②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취소 가능

개선

- 고소득 연구직·관리직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 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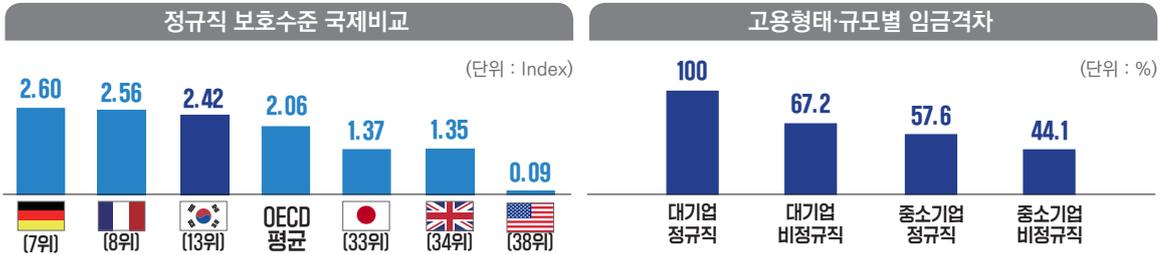
30

고용친화적 근로관계 조정·종료제도 정비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현황

- 주요국에 비해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야기 및 일자리 창출 부정적
- 청년 취업난, 중장년 고용불안, 비정규직 증가 등 부작용 초래 원인으로도 작용



개선

- 사용자가 금전보상 통해 근로관계 종료 허용해 해고보호방식 다양화, 채용거부감 완화
 - 변경해지제도* 도입해 경영위기시 해고가 아닌 근로조건 유연성 통해 대응 보장
- *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 통해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는 청약을 하고,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관계 해지

31

산업안전보건법 예측가능성 제고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현황

- 도급관계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 및 의무 모호
- 작업중지요건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정의와 구체적인 기준 부재

도급 관련 산업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실시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실시로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시설 등의 장소 미제공: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협업체 구성, 순회점검 미수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선

-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의 법상 정의·판단 기준 명시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법상 정의·판단 기준 마련

32

집회·시위 제도 개선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현황

- 무분별한 집회·시위로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및 자유 침해

집회·시위로 인한 애로 사례

- | (사례1) 甲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A社와 무관한 지하철 노선 변경 관련 A社 경영진 자택이 있는 주택가에서 200여명이 골목 점거하고 고성시위하여 주택가 시민들 불편 호소
- | (사례2) 乙시민단체, B社에 배드민턴장을 무상으로 지어 달라며 최대주주 일가 자택 앞에서 허가없이 수차례 집회 시위
- | (사례3) C社 노조, 주택가와 상권 밀집한 C社 사옥 앞에서 주야로 집회·시위, 지역 상권들도 집회 소음으로 고객 감소하여 애로

개선

- 무분별한 집회 제한할 수 있도록 집회시위법 개정
- 현수막 설치 기간·크기·개수 등 제한

현황

- 외국정부나 단체·세력 등 사주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에 악영향 크므로 산업기술 보호법보다 가중처벌 필요
- 美, 日, 대만 등 기술 강국들은 기술보호 위한 조치 강화中

주요국의 기술보호 조치 강화 현황

구분	 미국	 일본	 대만
법령	경제스파이법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국가안전법
특징	국가전략기술 유출시 간첩죄로 가중처벌	법 제정 추진	국가핵심관건기술 경제간첩죄 규정

개선

- 형법상 ‘기술유출 간첩죄’ 신설(형법 제98조 3항)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03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위한 여건 마련



34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소관 산자중기위원회

현황

- 현재 국내해상풍력 개발 시 최대 10개 부처의 29가지 법률 인허가 규제 존재
- 제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발전 활성화 관련 법안 발의됐으나 임기만료 폐지

제21대 국회 해상풍력발전 발의 법안

-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21.5월, 김원이 의원)
-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23.2월, 한무경 의원)
- |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23.2월 김한정 의원)

개선

-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조속 입법

35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완화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현황

-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도로에서 일정거리 떨어뜨려 설치해야 하는 의무 존재
- 과도한 이격거리 확대(지자체 조례)에 따라 발전시설 설치가능 부지가 대폭 감소

정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23.2월)

- | 주거지역 최대 100m 범위, 도로의 경우 이격거리 폐지 권고
- | 이격거리 완화·폐지하는 지자체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 정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 없음

개선

-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통일적 규정 마련(현행)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 (개선) 중앙정부 규율로 상향(신재생에너지법 개정)

3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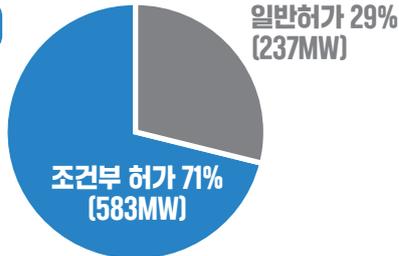
소관 산자중기위원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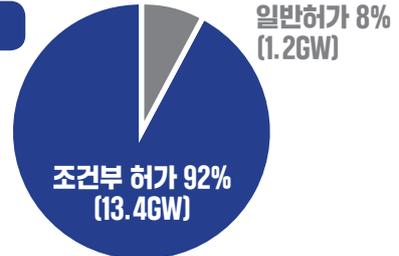
-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사업허가 감소. 허가를 받더라도 조건부(전력망 보강이 완료돼야 사업가능) 허가 대다수
- 지역사회 수용성이 매우 낮아 전력망 구축 지연

'22~'23년 전기위원회 허가현황

태양광



풍력



개선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 정부주도로 전력망 확충을 위한 협의·투자 추진(현재는 한전이 전력망 구축 관리)

37

LPG생산용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개선

소관 산자중기위원회

현황

- 석유수입부과금은 수입 LPG(면제) 및 생산 LPG(과세) 간 차등적 부과
- 차량연료 등 소비 증가로 LPG 수입이 증가해 국내 LPG 제조업 경영 여건 악화

LPG 원재료(원유)와 완제품 간 조세공과금 비교

구분	원유	LPG	
	수입시	생산시	수입시
석유수입부과금	16원/ℓ	16원/ℓ * 수입 원유 부과금 전가	환급
관세	3%	0%(할당관세)	0%(할당관세)

개선

- LPG생산용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면제 또는 환급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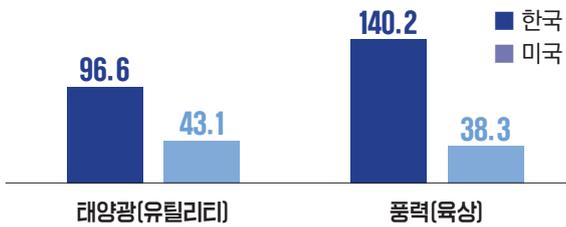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인센티브 제도 신설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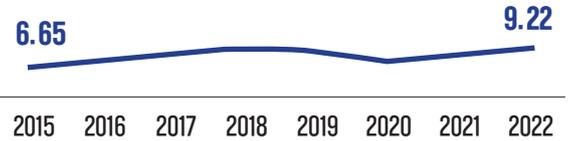
현황

- RE100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참여는 부족한 수준
-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주요국보다 높아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산을 제약

'25년 재생에너지 LCOE 전망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추이(%)



개선

- RE100 비용부담 및 진입장벽 완화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세제 인센티브 신설

39

친환경 타이어 구매 및 생산 보조금 신설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친환경 전기차는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나, 친환경 타이어 구매에는 보조금 지원 없음
- 친환경 타이어 사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친환경 원료 사용시 저감효과

친환경 원료 최대치(44%) 사용시 → CO2 최대 23% ↓, 비용 10% ↑

개선

- 전기차 보조금과 같이 친환경 타이어 구매 보조금 신설
- 일정량 이상 친환경 타이어 구매한 자동차 대여사업장에 법인세 감면
- 친환경 타이어 제조수량 설정하고 목표 달성시 타이어 제조업체 법인세 감면

40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선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용도에 상관없이 중유에 과세(17원/ℓ)
 - 정제공정 원료용 중유는 수출용은 환급 가능하나 내수용 비과세물품은 환급 불가
- 유사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은 석유화학공업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면세
- OECD 등 66개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에 소비세 부과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과세 및 환급 여부 비교

내수용		수출용	
과세물품	비과세물품	과세물품	비과세물품
환급	x	환급	환급

개선

- 원료용 중유를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 또는 조건부면세 대상에 포함

41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면세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수소제조용 설비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8.4원/kg)
- 수소경제 성장 위해 대규모 수소가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청정수소로는 물량 부족
- 이에 중간단계로 천연가스 기반의 수소(블루·그레이수소) 생산을 늘릴 필요 → 천연가스 등 수소제조 원료 세금을 인하해 수소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함

개선

- 수소제조용 설비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개별소비세(8.4원/kg) 면세

42

산업연료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산업용과 발전용 천연가스는 동일 용도임에도 개별소비세율은 다르게 적용
 - * 산업용은 동력 및 열원 생산을 위한 보일러연료 및 수소제조 연료로 사용되며 발전용은 열에너지 생산 용도로 사용
- 산업용 천연가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므로 교정세인 개별소비세 취지에 맞지 않음

천연가스 관련 개별소비세 현황

발전용		산업용		기타(도시가스 등)
일반(화력 등)	열병합	연료용	수소제조용	
12원/kg	8.4원/kg	42원/kg	8.4원/kg	42원/kg

개선

- 산업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해 발전용과 동일한 개별소비세율 적용(12원/kg)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04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제도 합리화



45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율 요건 완화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기업형태 등에 따른 차등구조 폐지('22년 법 개정)
- 주요국에 비해 익금불산입 구조 불리(EU는 지분율 차등 없음)

지주회사의 경우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변화

자회사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비고
	'22년 법개정 前	'22년 법개정 後	
50% 이상	100%	100%	-
40% ~ 50%		80%	20%p ↓
30% ~ 40%	90%		10%p ↓
20% ~ 30%	80%		-
30% 미만	80%	30%	50%p ↓

개선

- (1안) 지분율 10% 이상 내국법인에서 배당받는 경우 익금불산입률 100% 일괄 적용
- (2안) 지주회사에 '22년 개정 전 익금불산입률 적용 or 개정 규정 적용시기 4년 유예

46

배당금 및 자사주 소각에 대한 환류소득 인정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기업이 투자·임금·상생 등 지출 않고 현금 형태 보유시 미환류소득으로 간주
 - 미환류소득의 20% 추가과세
-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소각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의 대표적 환류 활동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안착 위해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 인센티브 필요

개선

- (1안) 배당 지급액 및 자사주 소각분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환류소득으로 인정
- (2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도래시('25년말) 제도 폐지

47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현행법상 기업이 배당금 지급 확대해도 세제혜택 없음
-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중
 - 다만, 기업의 배당금 확대를 장려하는 지원정책은 부족
-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
 -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 혜택 부여하여 투자 확대 유인·지원

개선

- 배당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올해 배당금액이 전년도 배당금 초과시 초과분의 10% 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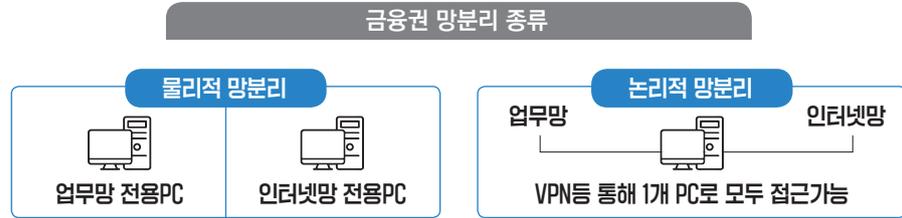
48

망분리 규제 완화 확대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13년부터 금융권 내부 정보 보호 위해 '물리적 망분리' 규제 도입
- 다만, 외부 인터넷용 PC와 업무용 PC가 구분되어 사용됨에 따라시 및 오픈소스 등 외부 인터넷을 활용한 혁신 금융서비스 개발에 제약



개선

- 美·EU 등과 같이 물리적 망분리 규제의 예외사유 확대 및 논리적 망분리* 허용
- * VPN(사설통신망) 통해 1개 채널(PC 등)로 내-외부망 모두 접속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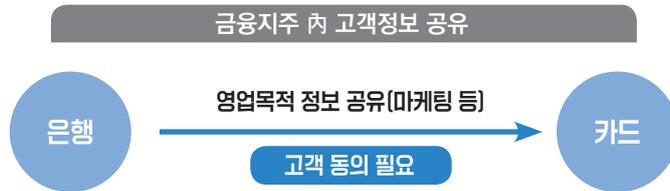
49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범위 확대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금융지주 內 계열사간에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동의 없이 고객정보 공유 허용
- 영업목적 정보 공유 제한으로 고객 맞춤형 종합 금융서비스 개발·제공 한계



개선

- '영업 목적' 고객정보 공유시에도 동의 없이 정보 공유 허용
- 고객정보 제공요건에 '정보 활용내역 주기적 통지', '사후 고객정보 활용거부권' 추가

50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사 주식 소유 완화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사에 대한 주식 소유를 금지해 자회사 아닌 회사에 대해서는 5% 소유 제한 및 의결권 행사 제한
- 他 금융업에 비해 과도한 출자 제한으로 빅블러 현상 등에 대한 대응력 약화



개선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 소유 허용(지주회사법 제6조의 3 삭제)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사 출자범위 확대(5% → 15%) 및 의결권 행사 완화

51

토큰증권(ST) 제도화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토큰증권은 부동산·미술품 등에 대한 조각투자에 적합한 증권 발행형태
-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되어야 토큰증권 사업을 할 수 있어 현행법상 새로운 투자 수요 충족 미흡
-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제도화 방침 발표하고, 제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되었음에도(임기만료 폐기) 제도화 지연되어 관련 사업 추진 애로

토큰증권 제도화 지연 관한 기업 애로 사례

- | 일부 증권사 및 조각투자사는 막대한 비용 들어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을 구축했음에도 제도화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
- | 토큰증권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여타 증권업계는 이에 신사업 추진 의지 상실

개선

- 토큰증권 제도화(발행·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5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금리부담·경기둔화에 따른 금융권 위험관리 강화로 벤처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곤란
- 국내 벤처투자는 민간투자자금 유입 저조하며 주요 모험자본 투자수단도 일정한 한계
- 반면 주요국(美·英)은 별도의 벤처 투자기구를 회사 형태로 설립해 민간자금을 공급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개선

-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기업에 의무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53

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규제 완화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은행법·보험법·금산법상 비금융회사 출자지분 15~20%로 규제中
- 빅테크의 적극적 금융업 진출에 비해 금융사는 비금융사와의 제휴만 가능

금융사의 비금융회사 출자지분 규제 현황

법령	조문	주요 내용	제한비율
은행법	제37조	他회사에 대한 지분증권 소유 제한	15%
보험업법	제109조	他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제한	15%
금산법	제24조	금융기관의 他회사 주식소유 제한	20%

개선

- [대형 비금융사] 금융사의 비금융회사 출자 규제 완화 - 인터넷전문은행 수준(34%)
- [소형 비금융사] 1대주주 되지 않는 조건으로 지분투자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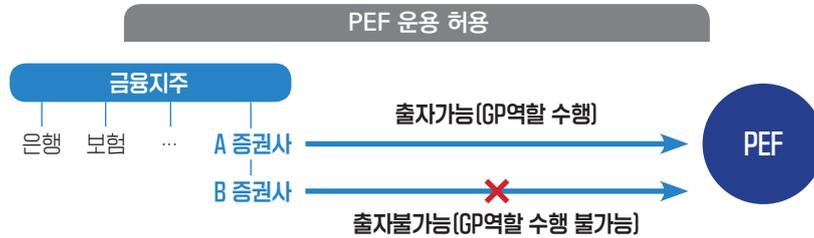
54

금융지주 손·증손회사의 PEF 운용 허용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한해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지분취득 허용
- 다만, 손·증손회사는 PEF 지분 보유할 수 없어(지배구조 단순화 취지) PEF 운용사 역할 수행 불가능 → 금융지주의 유연한 PEF 육성·운영에 제약



*GP : 무한책임투자자로 운용사를 의미

개선

- 금융지주회사 손·증손회사의 PEF 지분취득 허용(GP 역할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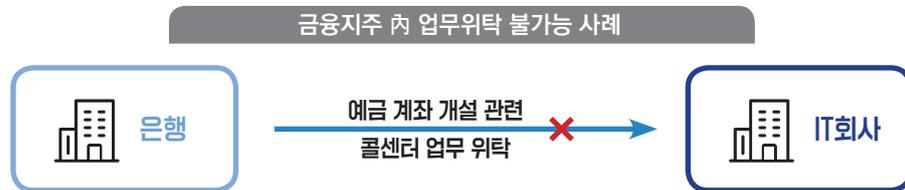
55

업무위탁 자회사의 인가·등록 요건 완화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현행법상 금융지주 자회사는 금융업 등 본질적 업무에 대해 자회사에 위탁 가능
- 다만, 위탁 받는 자회사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이 완료된 업종에 한정
-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 가능한 자회사임에도 인가·등록 안되는 업종(ex. IT)은 제한



개선

- 내부통제 기준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만족시 위탁 자회사의 인가·등록 요건 삭제

56

지주사 그룹 브랜드 개발 관련 영리활동 허용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금융지주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관련 부수업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 영위 불가
- 자회사들의 브랜드 통합 관리 및 통일성 있는 브랜드 전략 추진에 애로

금융지주사의 영리활동 범위

현행	(1)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경영성과 평가 등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2)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자회사 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등 경영관리 부수 업무
개선	지주사의 그룹 브랜드 개발·개선·관리 관련 업무 추가

개선

-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 지주사 업무범위 추가(브랜드 개발 업무 등)

57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보완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IT인재 유치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과 문화와 연봉 체계 등이 다른 별도의 자회사(스핀오프) 설립해 사업 추진하는 것이 유리
- 그러나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라이선스처럼 자회사에 양도할 방법 없으며, 서비스 최대 기간(4년) 경과 후 금융업 관련 업무로 인정 못 받으면 서비스 불가

개선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사업의 신설 자회사 등에 양도 허용
-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만료시 자동적으로 부수업무로 인정

58

금융 복합점포 영업규제 완화

소관 정무위·금융위

현황

- 금융지주사가 복합점포를 통해 보험상품까지 판매 허용('15) → 소비자 선택권 제고
- 그러나 복합점포 영업규제로 인해 서비스 수준 미흡 → 적자 누적으로 점포 수 감소

보험 복합점포 4대 영업규제

영업규제	문제점
① 점포 외부영업 금지	보험은 방문판매 외부영업이 대다수
② 은행·증권 공간 내 보험직원 모집 금지	물리적 공간 분리로 은행과의 시너지 효과 감소
③ 은행·증권 ↔ 보험 복합점포간 별도 출입문 사용	"
④ 점포 내 정규직원 배치만 허용(권고사항)	영업담당인 보험설계사 배치 금지

개선

- 점포 외부영업 허용, 은행·증권 공동상담실 사용 허용 등 영업규제 개선

59

합병시 채권자보호절차 개선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현황

- 우리나라는 합병에 대해 채권자 이의제기시 반드시 보호절차 진행(변제 등)
- 주요국은 합병이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채권자보호절차 생략 가능

구분	현황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보호절차 생략 가능
	채권자가 직접 합병으로 인한 채권 위험을 입증하면 보호절차 진행
	채권자 이의제기시 법원이 심사해 신청 기각 또는 담보제공 명령

개선

-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에 대한 채권자보호절차 생략
-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자율협약 등 찬성한 채권자의 이의제기 금지

현황

- 회사는 합병 결의 후 2주 이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 모두에게 이의제기 제출 관련 개별 통지 의무
- 반면 일본·독일 등은 공고로 같음하거나 개별통지제도가 없음

구분	현황
	개별통지 원칙, 정관에 정한 경우 공고로 같음 가능
	개별통지제도 없음 (편입등기 발표 6월 내 채권자 스스로 이의제기 가능)

개선

- 상장사가 금융위·거래소에 이의제출 통지 공시하면 개별 통지로 같음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05

국민 삶의 질 제고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 완화



61

비대면 의료서비스 허용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 현행 의료법·약사법은 비대면의료 및 의약품 배송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불허
 - * 현재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시범사업'을 실시중
-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관련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

선진국 사례

- | 美 Health Partner 연구소가 4만건의 원격진료 사례 조사한 결과, 건별 평균 \$88 절감(Health Affairs 학술지, '13년)
- | 美 원격의료기업 Teladoc은 '10분내 의사와 환자 연결' 서비스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응급실 방문 비율을 줄임

* 국내도 코로나19 기간('20.2월~'23.1월)까지 총 3,600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었으나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음

개선

-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성장 위한 비대면의료 및 약배송 서비스 허용

62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심의 완화

소관 보건복지위·식약처

현황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았더라도 일부 발체·매체변경시 재심의 필요
- 이미 심의를 거친 표시·광고의 경미한 변경에도 재심의를 받아야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 발생

기업 애로 사례

A기업은 판매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심의를 거친 여러 개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서 일부분을 발체하여 신규 홍보물을 제작하려 했으나, 새로 제작한 홍보물마다 표시·광고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어려움을 토로

개선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제외대상 확대
 - 여러 개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발체해 통합하거나 매체변경시 심의 제외

63

노인복지주택의 의료행위 규제 완화

소관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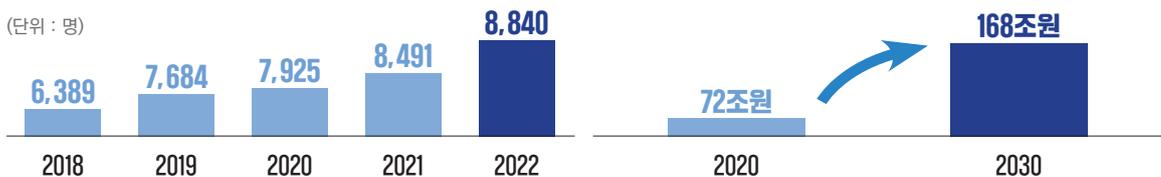
현황

- 노인복지주택은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은 미비
 - 의료인력 배치기준, 건강관리 운영기준 등
- 노인복지주택 거주 노인들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애로

노인복지주택 거주노인 규모(복지부)

실버산업 시장 규모(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위 : 명)



개선

- 의료기관 외부 의료행위 규제의 예외 인정 → 소속 간호사의 기초적 의료행위 허용
 - * 학교 보건실 · 사업장 의무실 등에서는 대중적 건강촉진, 기본처치, 보건지도 등이 가능
- 노인복지주택내 의료 및 간호사실 의료인력 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마련

64

의료기기 사진 광고 허용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 모든 의료기기는 기기관련 광고시 기기의 '성능·효능·효과'를 암시하는 사진 이용 불허
- 영상의료기기의 경우 영상의 해상도 등 사진을 통한 성능 전달이 필수적임에도 사진 사용 제한
- 동일한 제품인데도 국내 전용 광고 별도 제작해야 함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개선

- 전문가용 영상 의료기기(초음파진단기기, 디지털 엑스레이 등)의 성능에 대한 사진 이용 광고 허용

65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위한 규제 완화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현황

- 노후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부족하나, 관련 시설 확충 위한 절차 복잡

근로자 1만명 당 편의시설 수

식당		카페		편의점		병원	
전국	노후산단	전국	노후산단	전국	노후산단	전국	노후산단
338	18	45	11	16	3	34	1

- 산단 내 토지는 대부분 산업시설용지로 편의시설 건설이 불가능하며,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시 산단 개발계획 변경 필요해 수년 소요

개선

- 토지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없이 용도 변경 가능한 토지면적 기준 확대 등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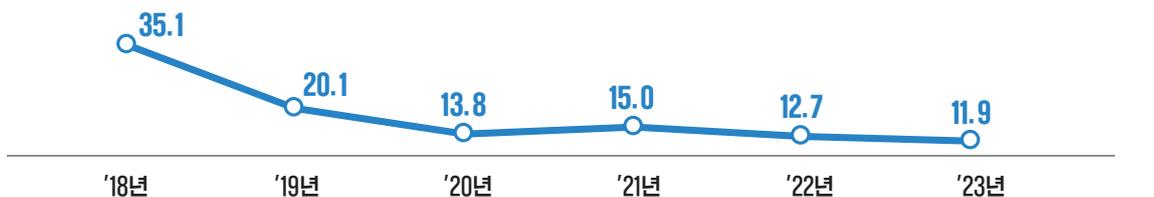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기준 개선

소관 국토교통위·국토부

현황

-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시 고려 가능한 요인을 제한하고, 증액 비율(5% 범위 내) 초과 금지
 - 100세대 이상은 임대료 증액시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고려 불가
- '19년 규제 시행 후 임대주택 비중 감소 등 전월세 서민 주거안정에 중장기적 악영향

규제 시행 후 임대주택 비중 추이



개선

- 시행령상 임대료 증액 고려요인으로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5% 한도 내) 추가
- 법 개정 前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 갱신하는 경우 소급적용 제외('18년 개정법 부칙 2조)

67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제도 개선

소관 국토교통위·국토부

현황

- 민간임대주택(100호 이상 등)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 보증수수료는 임차인 25%, 임대인 75%로 양 측 모두 부담中
 -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임차인의 동의 받는 것도 애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중략) 1.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

개선

-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신 임차인에게 가입여부 선택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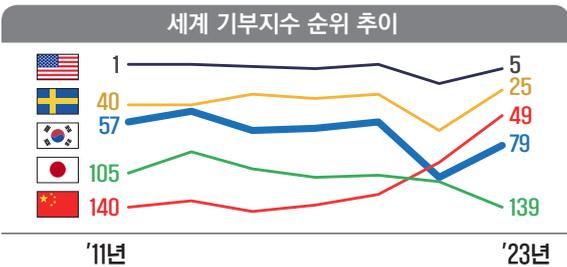
68

공익법인 출연재산 상증세 면세한도 완화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위축되는 추세(미국 5위, 중국 49위, 한국 79위)
- 주요국 대비 주식보유 규제 엄격해 공익법인 설립·기부 유인은 상대적으로 부족



대한민국	미국
[의결권 없는 주식] 허용	[의결권 없는 주식] 허용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미행사 20%	- 실질지배시 20%
- 일반 10%	- 제3자 지배시 35%
- 상출집단 등 5%	

개선

- 공익법인 주식 등 출연 상증세 면세한도 폐지 또는 20%로 상향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면세한도 별도조항 삭제, 의결권 미행사시 35%로 상향 등

69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제 완화

소관 정무위·공정위

현황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거래행위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 [대상] 기부금 포함
 - [기준]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 or 공익법인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 5% 이상

공익법인 애로 사례

ㅣ 甲그룹 소속 A공익법인은 자본총계가 10억원 수준의 소규모 공익법인
 1억원 기부받은 경우 의결·공시 기준인 100억원보다 매우 작지만 자본총계 5% 이상에 해당
 기부금 1억원에 대해 A공익법인은 금액 결정권한 없음 →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개선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기부금' 삭제
- [기준 일원화] 100억원 이상 거래(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기준 삭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06

대·중소 상생 협력방안



현황

- 인권 및 환경 보호 위한 글로벌 공급망 ESG 규제 확산中

주요국 공급망 ESG 규제 동향

구분		 EU	
법령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시행시기	'22.6월 시행	'24년 발표 예정('23.6월 확정)	'24.1월 시행(유예기간 6개월)

- 원사업자가 공급망 ESG 규제 준수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공급망 실시하는 경우 협력업체의 반대·분쟁 발생할 우려(하도급법상 부당 경영간섭 등 해당 소지)

개선

- 관련 법령에 원사업자의 정보공개·실사·개선 요청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
 - 하도급법 제18조 및 공정거래법 제45조 개정

현황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는 기술자료 개념이 모호하고 방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건별로 기술자료요구서 교부

불분명한 기술자료 범위 관련 애로 사례

- EU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전자제품에 유해물질 포함시 EU 역내 판매금지)상 인증 위해 인증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수급사업자의 증명서류에 대해 건별로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중
-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서 의무적 요구하는 수급사업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받기 위해 건별로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중

개선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범위 명확화
 - '해외 수출규제·他법률 준수 위해 의무 제출해야 하는 수급사업자 자료',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는 기술 자료에서 제외

현황

- 개정 가맹사업법('24.7월 시행)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공급가 산정방식 기재의무 부과
-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과도한 규제로 미국은 '정보공개서' 통해 필수품목 관리

가맹계약서 기재의무 강화시 애로 사례

- 필수품목 추가되거나 공급가격 변동되는 등 거래조건 변경시마다 가맹본부 실무자들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새로운 가맹계약 체결해야 하는 부담
- 브랜드 통일성 필요한 가맹사업에 사업자마다 협의 여부가 달라진다면 신제품 운영 어려워질 것 → 신제품 도입 불가능

개선

- 계약서 기재의무 조항 中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삭제
 - 개정 가맹사업법('24.7.3 시행) 제11조 2항 12호 삭제

73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절차 통합

소관 산자중기위원회

현황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에 준대규모점포 개설하는 경우 → 대규모점포 등록했던 동일한 절차를 재차 거쳐야해 기업 부담 가중
- 대규모점포 등록제는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및 필요시 제3기관 검증
- 사업주 입장에서는 허가절차 다시 거칠 경우 불허될 리스크 존재

개선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에 준대규모점포 입점시 준대규모점포 등록 절차 생략
 -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서류*에 준대규모점포 내용 포함하는 경우 면제

*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74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에 온라인배송 허용

소관 산자중기위원회

현황

- 전통시장 보호 등을 위해 2012년부터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규제 시행
- 온라인쇼핑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대형마트에만 온라인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

대형마트와 온라인 규제 비교

구분	대형마트	온라인
진입규제	有(등록제, 사업조정제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출점제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 출점에고제 등)	無(신고제)
영업규제	有(월 2회 공휴일 휴무, 자정~오전 10시까지 오프라인 및 온라인영업 제한)	無(365일 24시간 영업)

개선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온-오프라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배송 허용

75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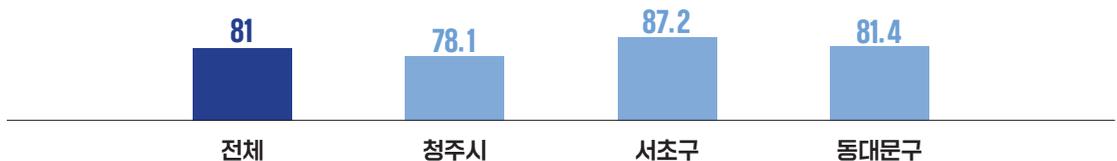
소관 산자중기위원회

현황

-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규정
- 이용 편의 및 지역상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휴일 지정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따른 대형마트·SSM 이용자의 만족도

(단위 : %)



개선

- 의무휴업 요일을 자율적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 폐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의2 제3항 삭제)

76

소상공인 운영 준대규모점포 규제대상 제외

소관 산자중기위원회

현황

- 현행법은 대기업 등의 가맹형 체인사업 형태의 점포에 대해 출점 및 영업 규제 적용
- 개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SSM까지 의무휴업일 등 규제 적용은 과도

유사 법 적용 사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가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업조정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사업조정 대상을 한정

개선

- 일괄적인 규제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고려해 규제 적용여부 결정 필요
- 대기업 등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대규모점포의 개설비용 부담률이 50% 미만인 점포)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

77

공공 SW사업 개발 참여 제도의 합리적 조정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황

- '13년 대형 공공SW 사업에 상출제(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대기업 참여 제한
- 최근 공공 SW에 대해 사회적으로 높은 안정성 요구됨에 따라 규제 재검토 필요
 - 정부는 7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상출제 대기업 참여 허용계획 발표('24.1월)

공공 SW사업 품질 관련 최근 사례

- | 정부는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생·학부모의 편의성 제고 위해 2800억원 투입해 AI와 클라우드 기술 등이 적용된 '4세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 현행 법이 상출제 대기업 제한함에 따라 중견·중소 IT기업 컨소시엄이 사업 추진
- | '23.6월 시스템 개통되었으나 교과 평가 자료 임의 삭제, 교원복무 시스템 접속 지연, 시험 시행 전 문항·정답 유출 등 문제 발생 → 교원·학생·학부모 혼란

개선

-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정의 합리적 조정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